

『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정신건강복지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신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인 「정신건강복지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 - (현행) 「정신보건법」 → (개정) : 「정신건강복지법」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정신건강복지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정신보건법」이 「정신건강복지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규를 현행화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